

●중양해양안전심판원공고 제2026-03호

개선권고 재결

2025년 12월 30일 중양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07일

중양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중양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6-03호(개선권고 재결공고[중양해심 제2025-013호
(어선 제102해진호 전복사건)])**

사 건 명 : 어선 제102해진호 전복사건

피요청자 : 김**(****.*.**.*)

부***** ** ***** ***, ** *****(***, ***** *****)

귀하가 소유한 제102해진호가 2024. 3. 14. 03:55경 통영시 욕지도 남방 약 5.5해리 해상(북위 34도 32분 34초 동경 128도 18분 01초)에서 전복된 후 침몰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선원들이 사망하고 연료유가 해상에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제102해진호 선장이 어획물을 어창에 적재하지 아니하고 어획물이 담긴 어망을 상갑판에 적재한 후 고박하지 아니한 채 항해함으로써 선박의 무게 중심이 상승하여 복원성이 저하된 상태에서 선체 횡동요에 의하여 어획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나, 귀하가 잘못된 조업 관행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어획물은 반드시 어창에 적재한 후 적절히 고박하고 대량 어획 시에는 양망 중단 또는 일부 방류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선장에게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 등을 실시하고 안전보건표준 매뉴얼 등의 안전관리규정을 재검토한 후 실질적인 위험 요인을 반영하여 그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것을 개선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